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4.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4. 7.

다. 상 정 일 자 :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3. 4. 20.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신현배 기업지원과장)

가. 제안사유

- 1)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에서 위임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2)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3)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4) 화성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5) 산업재해 예방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0조)
- 6)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협력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사업의 추진,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다. 이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 많은 수의 제조업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4.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4. 7.

다. 상 정 일 자 :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3. 4. 20.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김민규 농식품유통과장)

가. 제안사유

- 1) 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시행(‘22. 7. 5.)에 따라 상위법과 연계하고자 하며, 본 조례를 근거로 출범한 위원회의 운영 및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상위법 기준 용어정비(안 제1조 ~ 제13조)
- 2) 상위법 규정 조문 생략(안 제3조 및 제6조)
 - “농수산물”, “식품” 정의 등
- 3) 위촉직 위원 구성범위 확대(안 제8조 및 제11조)
 - (현행)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 (개정) 종사했거나 종사 중인 자
 - (현행) 분과명칭 명시 → (개정)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시행에 따라 상위법과 연계하고자 하며, 본 조례를 근거로 출범한 위원회의 운영 및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재정비하는 사안임.

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기준 용어정비, 상위법 규정 조문 생략, 위촉직 위원 구성 범위 확대 등임.

다. 본 개정을 통해 화성시민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에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됨.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4.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4. 7.

다. 상 정 일 자 :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3. 4. 20.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

가. 제안사유

- 1)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한 우리시 수도검침 업무의 위·수탁 기간이 2023.7.31.자로 만료되어, 전문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수도검침 업무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 2)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
- 3)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
- 4)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제42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한 우리시 수도검침 업무의 위·수탁 기간이 2023.07.31.자로 만료되어, 전문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수도검침 업무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나. 민간위탁 기간은 2023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3년간이며,

다. 요금부과율의 정확성과 체납 징수율을 높이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위탁업체 선정 시 전문성과 체계성 뿐이 아닌 재정안정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수도검침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4.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4. 7.

다. 상 정 일 자 :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3. 4. 20.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백진현 수질관리과장)

가. 제안사유

- 1)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인상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에 기여 및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관련 세부 기준의 마련 (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
- 2)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인상(안 제9조 및 별표).
- 3) 조례 정비과제 반영 및 관계 법령 현행화 등(안 제2조, 제4조, 제8조, 제9조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인상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에 기여 및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안으로,

나. 장기간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 처리시설 사용료 인상 없이 유지되어, 현실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4. 6.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4. 7.

다. 상 정 일 자 :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3. 4. 20.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김민규 농식품유통과장)

가. 제안사유

- 1) 팔탄 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3년 08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생산성(예산절감) 및 효율성(전문인력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팔탄 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 위 치: 화성시 팔탄면 터덕골로 120번길 61
- 시설내용: 침출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 처리용량: 100톤/일(물리화학적 처리)
- 사 업 비: 115,830,000원/년

2) 위탁사무

- 침출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 침출수처리 약품 관리
- 관계 법규에 규정된 업무
- 부대시설 운영·관리

- 기타 침출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등

3)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년4개월 (2023. 09. 01. ~ 2025. 12. 31.)

4) 수탁자 선정방식

- 화성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선정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 위원회에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
- 수탁자와는 위탁 내용, 의무에 관한 사항 및 조례,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하여 협약서 작성, 교환 예정
※ 위수탁 조건 위반 및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위탁 취소 가능

5) 수탁자 신청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1) ~ 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다음의 각 호의 자격을 1개 이상 득하고 주된 영업소를 경기도에 둔 기관 또는 업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등록을 득한 기관 또는 업체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환경부문 수질관리분야로 신고한 기관 또는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내에서 유사시설(공공 침출수처리장, 공공 하·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시설용량 100톤/일 이상의 유사시설을 1년 이상 운영·관리하여 준공한 실적(1년 이상 운영·관리 중인 시설포함)을 보유한 업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동의안은 팔탄 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3년 08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민간위탁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년 4개월간이며, 침출수처리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